

光州直轄市西區象徵物에 關한 條例 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3年 12月
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3年 9月 25日

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3年 10月 4日 (總務委員會)

라. 上程日字 { 1993年 11月 2日 第27回 閉會中 總務委員會에서 未了  
1993年 12月 21日 第29回 會期中 第9次 總務委員會  
第29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(定期會)

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2回 { 1993年 11月 2日  
1993年 12月 21日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文化公報室長 李元昌)

가. 提案事由

○ 광주직할시 서구를 상징하는 꽃, 나무, 새를 지정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나타내고 지정된 상징물을 보호 육성하기 위함

나. 主要骨子

- 구의 꽃 - 목련
- 구의 나무 - 느티나무
- 구의 새 - 비둘기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는 꽃, 나무, 새등을 지정하여 우리 구의 특성을 나타내고 지정된 상징물을 보호 육성하므로써 서구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리라는 검토의견

4. 質疑 및 答辯 要旨

質	疑	答	辯
○ 潘正煥 委員	구조정위원회를 재 개최하여 구화, 구목, 구조 결정사항을 재 심의토록 했는데 심의 결과는?	○ 文化公報室長 李元昌	'93년 11월 19일 구정 조정위원회를 재 개최하여 심의결과 종전안과 같이 재의결.

5. 討論要旨 : 없 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

7. 少數意見要旨 : 없 음

#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 관한 조례안

##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예관한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3. 9.

제 출 자 : 광주직할시서구청장

의 안	
번 호	

### 1. 제안사유

우리구를 상징하는 꽃·나무·새를 지정하여 우리구의 특성을 나타내고, 지정된 상징물을 보호 육성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구 의 꽃 : 목련
- 구의 나무 : 느티나무
- 구 의 새 : 비둘기

### 3. 참고사항

구민의 날 및 구 상징물 지정 추진현황

##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 관한 조례안

제 1 조 ( 목적 )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서구를 상징하는 구의 꽃·구의 나무·구의 새를  
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구의 꽃 ) 구의 꽃은 목련으로 정한다.

제 3 조 ( 구의 나무 ) 구의 나무는 느티나무로 정한다.

제 4 조 ( 구의 새 ) 구의 새는 비둘기로 정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